

행 정 자 치 부

통 보

제 목 겸직허가 등 없이 연구개발 수탁과제 연구수당 지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을 근거로 ○○○○청, ○○○○○○○○○기획평가원(이하 “○○○”이라 한다.)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이 주요 관장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에서 제242회 및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및 2016년 업무보고자료와 ‘○○○원 2016년도 연구개발국 사무분장’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탁과제를 포함하여 각종 시험·연구사업 등이 담당 직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법」,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을 근거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에 따른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검칙허가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강원도에서는 [표]와 같이 2013년부터 총 275개의 연구개발 수탁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전 검칙허가도 받지 않고,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지 여부, 초과근무 현황 등을 확인하여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총 92명에게 총629백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그 결과 ○○○원(○○○국) 소속 공무원 정원(2016년 8월 기준, 87명) 대비 연평균 89.4%인 78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 받았다.

[표] ○○○○원 연구개발 수탁과제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과제수	경비
합 계	275	12,427	87	3,759	82	3,260	59	2,993	47	2,415
○○○○과	41	1,874	11	542	10	475	11	535	9	322
○○○○과	61	3,695	20	986	18	935	11	927	12	847
○○○○연구과	65	2,253	16	506	20	608	18	661	11	478
○○○연구소	22	938	9	350	7	280	5	235	1	73
○○○연구소	26	1,785	12	648	6	375	3	314	5	448
○○○○연구소	11	263	2	67	5	117	2	43	2	36
○○연구소	21	560	7	253	9	182	3	65	2	60
○○○○연구소	28	1,059	10	407	7	288	6	213	5	151

※ 2016년 8월 기준

□ 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비교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자체연구개발사업(도비)		수탁과제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금액
총 계	216	10,900	275	12,427
2013년	46	2,333	87	3,759
2014년	49	2,388	82	3,260
2015년	62	3,409	59	2,993
2016년	59	2,770	47	2,415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탁받아 추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이 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